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내규

전면개정 : 2020. 5. 18.

개정(제1차) : 2020. 10. 23.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일반대학원 학칙과 내규를 통해 대학원 경제학과의 역할과 의무로 정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업) ①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30학점으로 하며,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30학점으로 한다. 통합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54학점으로 한다.

② 석사학위과정 학생과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수료학점 중 최소 21학점, 통합과정 학생은 수료학점 중 최소 39학점을 본교 경제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나머지 학점은 주임교수의 승인하에 타교 또는 타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단, 타교 경제학과 과목은 본교 경제학과에서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과목과 중복되지 않는 과목에 한하여 승인이 가능하다.

③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미시경제학 1(ECO6102)과 거시경제학 1(ECO6201)을 필수로 수강하여야 한다.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미시경제학 2(ECO8102)와 거시경제학 2(ECO8201)를 필수로 수강하여야 한다.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미시경제학 2와 거시경제학 2의 선수과목으로서 미시경제학 1과 거시경제학 1을 수강하여야 하나, 본교 또는 타교의 대학원에서 이에 해당하는 과목을 수강한 경우 미시경제학 2 및 거시경제학 2의 담당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하에 수강을 면제받을 수 있다. 통합과정 학생은 미시경제학 1, 2와 거시경제학 1, 2를 필수로 수강하여야 한다.

④ 석사학위과정 학생과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수료학점 중 최소 6학점, 통합과정 학생은 수료학점 중 최소 12학점을 본교 경제학과에서 개설하는 영어강의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본교 석사학위과정에서 본교 경제학과 개설 영어강의를 6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하고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 박사학위과정에서 요구하는 영어강의 의무 이수학점에서 석사학위과정에서 초과로 영어강의를 이수한 학점만큼 차감이 가능하다.

⑤ 학부 전공이 경제학이 아닌 석사학위과정 또는 통합과정 학생은 학부 미시경제학(ECO2102), 거시경제학(ECO2101), 경제수학(1)(ECO1101)을 보충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단,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보충과목의 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제3조(종합시험) ① 석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 과목은 미시경제학 1, 거시경제학 1, 그 밖의 전공 한 과목으로 한다.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의 종합시험 과목은 미시경제학 2, 거시경제학 2, 그 밖의 전공 두 과목(미시경제학 1과 거시경제학 1 제외, 본교 경제학과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석사학위과정에서 응시한 과목도 제외)으로 한다.

②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최저학점은 석사학위과정 21학점, 박사학위과정 12학점, 통합과정 36학점으로 한다. 보충과목 및 청강과목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석사학위과정 21학점 중 9학점, 박사학위과정 12학점 중 9학점, 통합과정 36학점 중 15학점까지는 타교 또는 타 학과 개설 과목을 포함할 수 있다.

③ 휴학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시험 신청일로부터 시험 당일까지의 기간 동안 재학 상태인 학생만이 해당 학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 ②항과 ③항에서 기술한 종합시험 응시 요건을 갖춘 학생은 자신의 학위과정 동안 본교 경제학과에서 수강하여 이수학점에 가산된 과목에 대하여 해당 과목의 담당교수가 출제한 종합시험에 응시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본교에서 수학 후 입학한 학생은 입학 전에 본교 경제학과에서 수강한 과목의 종합시험에도 응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과목의 학점이 입학 전 학위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이미 인정되었다면 현 과정의 이수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되지는 않는다.

⑤ ②항의 종합시험 응시를 위한 최저학점에는 응시 학기에 이수하는 학점도 포함한다. 단, 응시 학기에 이수하지 못하는 학점이 있어 최저학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학기 응시는 전부 무효가 된다. ④항의 종합시험 응시 신청 가능 과목에는 응시 학기에 수강하는 과목도 포함한다. 단, 종합시험 응시를 신청한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즉, C- 이상의 학업성적 등급을 획득하지 못하면), 해당 과목에 대한 응시는 무효가 된다.

⑥ 현 학위과정에서 종합시험에 최초로 응시하는 학생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세 과목,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의 경우 네 과목에 모두 응시하여야 한다. 일부 과목에 불합격하여 종합시험에 재응시하는 학생은 응시 과목(또는 출제 교수)을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응시 과목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응시 과목의 수를 불합격한 과목의 수와 같게 신청하여야 한다.

⑦ 석사학위과정 학생이 미시경제학 1, 거시경제학 1, 계량경제학 1(ECO6331) 중의 과목에서 B+ 이상의 학업성적 등급을 획득한 경우 수강한 과목의 담당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하에 해당 과목의 종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조(외국어시험) ① 경제학과는 외국어시험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며, 토익 800점, 토플 iBT 79점(CBT 213점, PBT 550점), 또는 IELTS 6.5점 이상을 획득한 학생을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외국어시험 합격을 인정받으려는 학생은 매 학기 공지되는 외국어성적 제출 기간에 외국어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입학 지원 시 제출한 외국어성적이 외국어시험 합격 기준을 충족한 학생 또는 본교 경제학과 석사학위과정에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도 외국어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어가 공식 언어인 국가 출신의 외국인 학생 또는 영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은 주임교수의 승인하에 외국어성적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5조(학위논문) ① 직전학기까지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학생에게 학위논문 작성 자격이 주어진다.

② 석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고, 박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5인으로 한다. 심사위원 중 1인을 심사위원장(주심)으로 한다. 심사위원 중에는 본교 소속이 아닌 박사학위 소지자를 외부 심사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석사학위논문 심사위원 중 1인,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 중 2인까지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③ 논문지도교수와 심사위원장은 본교 경제학부 전임교원으로 한다.

④ 박사학위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도교수가 요청하여 대학원이 승인한 경우 국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석사학위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적극 권장한다.

⑤ 박사학위과정 학생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위논문을 토대로 작성한 학술논문을 SSCI, SCIE, SCOPUS 등재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에 2편 이상을 게재하거나 게재를 확정하여야 한다. 단, SSCI 또는 SCIE 등재 학술지에 1편을 게재(확정)하는 경우에는 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국제 학술지의 경우 “accepted” 또는 “accepted with minor revisions”를 게재확정으로 간주한다. 논문게재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게재한 경우 논문 별쇄본(또는 출력물)을 제출하여야 하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가장 최근에 투고한 논문과 해당 학술지로부터 받은 게재확정을 알려주는 공식편지나 전자편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게재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논문 한 편당 저자가 3인 이하이어야 하며, 저자가 4인 이상인 경우에는 학생은 논문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재학기간 동안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본인의 논문을 1회 이상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 ① 석사학위과정 학생은 석사학위논문에 상응하는 대체실적으로 졸업할 수 있다. 석사학위논문에 상응하는 대체실적은 아래의 필수요건 1과 필수요건 2를 충족하여야 한다.

② 필수요건 1은 본교 경제학과 개설 과목 6학점을 추가 이수하고 전체 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 이상이면 충족된다.

③ 필수요건 2는 아래의 요건을 갖춰 연구보고서 또는 프로젝트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거나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면 충족된다.

1. 연구보고서 및 프로젝트보고서: 보고서에 현실 경제 및 사회 문제에 대해 경제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국문 또는 영문으로 15페이지 이상(한컴오피스 한글파일 기준으로 기본 쪽 여백, 글자 크기 11pt, 장평 100%, 자간 0%, 줄 간격 160%)을 단독 저자로 작성하여야 한다.

2. 학술지 논문 게재: SSCI, SCIE, SCOPUS 등재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에 논문 1편을 게재하거나 게재를 확정하여야 한다. 게재한 경우 논문

별쇄본(또는 출력물)을 제출하여야 하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가장 최근에 투고한 논문과 해당 학술지로부터 받은 게재확정을 알려주는 공식편지나 전자편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술대회 논문 발표: 교육기관, 연구기관, 경제학 또는 관련 분야의 학회가 주관하는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논문 1편을 발표하여야 한다. 학생 발표 위주의 소규모 세미나, 워크숍, 발표회 등은 학술대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학술대회 내의 대학원생 세션은 인정함). 신청학생이 단독 발표자로 표시된 학술대회 공식 프로그램, 발표 논문, 발표 증빙 사진(또는 발표를 증빙할 수 있는 그 밖의 문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저 논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따른다. 박사급 이상 공저자는 대체실적 심사 신청서상의 지도교수 1인으로 제한한다. 지도교수 이외의 공저자가 있는 경우 지도교수를 제외한 저자의 수를 나누어 편수를 계산한다. 이 경우 논문 게재와 발표를 합하여 1편 이상이 되면 논문 게재 및 발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되, 동일한 또는 유사한 논문의 게재 또는 발표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5. 부실학술지에 게재한 또는 부실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밖의 연구윤리 위반행위가 수반된 논문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석사학위논문에 상응하는 대체실적을 제출하여 심사 받고자 하는 학생은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의 연구계획서 제출일까지 본교 경제학부 전임교원 1인을 지도교수로 배정받아 대체실적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대체실적 심사 요청자는 석사과정 3학기 이상 7학기 이하 이수자 중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며, 8학기 학생은 대체실적 미승인 시 학기연장이 불가하다.

⑤ 대체실적 심사 신청자의 지도교수와 주임교수는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점검하고 필수요건 1, 2의 충족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여 연구계획서 승인기간 내에 대체실적 심사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⑥ 대체실적 심사 신청을 승인받은 학생은 공지되는 기간 내에 심사보고서 양식과 제3항에서 기술한 필수요건 2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대체실적 심사 신청 시점에 필수요건 1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성적 확인 및 정정 기간이 종료한 직후 성적증명서 등 최종 학기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임교수는 자신을 포함한 3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대체실적이 필수요건 1, 2를 충족하는지 심사하여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한다. 그 후 대체실적 합격자의 심사결과를 상경대학을 통해 대학원에 제출하고 석사학위논문 대체실적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다.

제7조(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①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 취득에 대해서는 수업, 자격시험, 학위논문, 학위의 수여 등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협정에 명시할 수 있다.

② 공동학위 또는 복수학위는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내규」와 협정에 명시된 사항을 동시에 충족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8조(학과위원회) ① 경제학과 대학원 학사를 관장하기 위해 ‘경제학과 대학원위원회(이하 학과위원회)’를 둔다.

② 학과위원회는 대학원 입학전형 합격 사정, 내규 개정 등 경제학과 대학원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학과위원회는 주임교수를 포함한 경제학부 전임교원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고, 주임교수를 위원장으로 한다. 학과위원회 위원은 주임교수가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해 새로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학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주임교수가 소집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입학전형 사무) ① 경제학과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으로 구성된다. 단 관련 규정에 따라 구술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입학전형 전에 주임교수는 대학원 입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학과 내규 개정이 필요한 경우 학과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③ 주임교수가 교체되면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입시 등 업무 일체를 인계하고,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0조(입학전형 서류심사) ① 서류심사를 위해 주임교수는 경제학부 전임교원 3인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관련 규정 및 평가지침을 안내한다.

② 각 평가위원은 개별적, 비공개적으로 서류심사를 수행하고 ‘서류심사 평가서’를 작성하여 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 서류심사의 만점은 200점이며,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및 대학원 성적: 120점

2) 학업 및 연구계획서: 75점

3) 언어능력 증빙서류(공인 외국어 성적표, TOPIK(외국인) 등): 5점

③ 주임교수는 서류심사 평가서를 바탕으로 지원자별 평균 성적을 계산하고 ‘서류심사 평균 성적표’를 작성한 후, 서류심사 사정을 위한 학과위원회를 소집한다.

④ 학과위원회는 서류심사 평균 성적을 기준으로 합격자와 구술시험 대상자를 정한다. 동점자가 있으면 ②항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더 높은 평균 점수를 얻은 지원자를 우선순위에 둔다. 모든 평가항목의 평균 점수가 같으면 학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⑤ 학과위원회는 서류심사 사정 후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서류심사 평가위원 명단, 서류심사 결과, 특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⑥ 주임교수는 학과위원회에서 확정된 서류심사 결과를 ‘입학전형 서류심사 결과표’에 기재하고 본인과 학장의 날인을 거쳐 대학원에 제출한다.

⑦ 서류심사 과정에서 생산된 서류심사 평가서, 서류심사 평균 성적표, 학과위원회 회의

록은 문서 보존을 위해 주임교수와 학장의 내부결재(사본 파일 첨부)를 거쳐 학과에서 원본 및 사본을 보관한다. 원본 서류는 대학원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중앙서류보관소에 이관하여 10년간 보관한다.

제11조(입학전형 구술시험) ① 구술시험을 시행할 경우, 주임교수는 경제학부 전임교원 3인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관련 규정 및 평가지침을 안내한다.

② 각 평가위원은 지원자를 평가하고 '구술시험 평가서'를 작성하여 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 구술시험의 만점은 100점이며,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

- 1) 전공에 대한 지식: 50점
- 2)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 30점
- 3) 전공에 대한 적성: 20점

③ 주임교수는 구술시험 평가서를 바탕으로 지원자별 평균 성적을 계산하고 '구술심사 평균 성적표'를 작성한 후, 구술시험 사정을 위한 학과위원회를 소집한다.

④ 학과위원회는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의 총점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정한다. 동점자가 있으면 다음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 1) 서류심사 평균 성적이 높은 지원자
- 2) 구술시험 평균 성적이 높은 지원자
- 3) 제10조 ②항의 서류심사 평가항목과 제11조 ②항의 구술시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평균 점수가 높은 지원자
- 4) 모든 평가항목의 평균 점수가 같으면 학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⑤ 학과위원회는 구술시험 사정 후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서류심사 평가위원 명단, 서류심사 결과, 특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⑥ 주임교수는 학과위원회에서 확정된 구술시험 결과를 '입학전형표'에 기재하고 본인과 학장의 날인을 거쳐 대학원에 제출한다.

⑦ 구술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구술시험 평가서, 구술심사 평균 성적표, 학과위원회 회의록은 문서 보존을 위해 주임교수와 학장의 내부결재(사본 파일 첨부)를 거쳐 학과에서 원본 및 사본을 보관한다. 원본 서류는 대학원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중앙서류보관소에 이관하여 10년간 보관한다.

부 칙

- ① 이 개정내규(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는 2020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이전 입학생은 입학 시점의 내규를 적용한다. 단, 제3조 ⑦항은 입학 시점에 상관없이 2020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개정내규(제6조)는 2018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하여 2020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③ 이 개정내규(제7조)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이 개정내규(제8,9,10,11조)는 2020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